

## ◆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

2002년 FAO/IPPC 사무국에서는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s) No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채택하고 각 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증명시스템 및 수입검역 절차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식물검역소에서 2002년 1월 19일 고시되었던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국제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오니, 동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캐나다와 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편집자주)

###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

#### ◆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 호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월 일

국립식물검역소장

#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입 목재포장재 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과 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사멸·제거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제기준”이라 함은 FAO/IPPC 사무국에서 정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s) No 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말한다.
3.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목재중심부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고열건조(Klin Dry)처리를 포함한다.
4. “MB훈증”이라 함은 목재포장재에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기체상태로 훈증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소독처리업자”라 함은 “열처리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
6. “열처리업자”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7.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8. “소독작업결과서”라 함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 제2장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제3조(수입요건)** ①수입화물(농산물·공산품·이산화물 등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의 목재포장재는 수출국 정보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별표2의 방법으로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되고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5의 소독처리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며, 마크가 없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

②별표1의 소나무재선충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된 것만 수입 할 수 있다.

③수출국에서 이미 사용된 목재포장재를 재조립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처리되고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한다.

**제4조(수입검사 등)**①식물방역관은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임의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식물방역관은 수입컨테이너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장에게 검사대상 컨테이너의 상세정보(선명, B/L No, 컨테이너번호, 검역담당공무원 등)를 통보하는 한편, 그 화물의 소유자(또는 대리인)와 컨테이너 야적장 운영자에게도 미리 통보하여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개장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식물방역관은 컨테이너 검사 후에는 식물검역 봉인(Seal)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식물검역 봉인 사용대장을 기록관리 한다.

④식물방역관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목재포장재 검사 처리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5조(처분의 기준)**①식물방역관은 제4조에 의한 수입검사 결과 목재포장재에 별표5의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없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있지만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에게 소독 또는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다.

②다만,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로부터 수입된 것과 소독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반송한다.

**제6조(소독·폐기의 방법)**식물방역관으로부터 소독 또는 폐기·반송 명령을 받은 화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소독·폐기·반송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해 별표2의 방법으로 소독하거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1. 소각처리
2. 매몰(깊이 1m 이상으로 하며,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는 처리할 수 없다)
3. 가공처리 : 식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가공

### 제3장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

**제7조(수출검사)**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각 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5의 소독처리마크를 찍어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식물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8조(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①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식품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에서 수입국 요구조건에 적합한 소독처리를 한 후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 원본이 첨부된 수출식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소독작업결과서를 재 사용할 수 있으며, 재 사용시 재고량에 대한 방역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식물방역관은 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처리 사항이 부기된 수출식품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①소독처리업자 또는 수출자는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피복·격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독처리업자 또는 수출자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 되었거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선적 전 처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소독처리업체의 관리

**제10조(소독처리업체 신청 및 결과)**①열처리시설 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열처리시설 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지소장은 별표3의 열처리시설 확인 방법에 따라 별표4의 열처리시설 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6호 서식 열처리시설 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방제업체는 별도의 지정 신청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①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별표5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소독처리업자로부터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식물검역소장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

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2조(소독처리업자의 의무)** ①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 서식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독처리 업자는 수출입자 또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작업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이나 타 업체에 대여해서는 안되며,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독처리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지정된 소독처리 업체의 소독처리 시설·장비상태, 소독처리 마크 표시, 소독처리 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개조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관할 구역 지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보고사항에 따라 증명서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소독처리증명의 중단)** 지·출장소장은 소독처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독처리업체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의 소독작업결과서의 발급 및 제11조의 소독처리 마크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의 확인 결과 소독처리업체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거나 소독증명을 한 경우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열처리시설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고시) 식검고시 제2002-1호(2002. 1. 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

식물방역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1의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

- 아시아 : 일본, 중국, 대만
- 북·중남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유럽 : 포르투갈

[별표2]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방법

### 1. 열처리(Heat Treatment)

- 식물검역기관이 지정한 열처리 시설에서 목재 중심부의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되어야 한다. 열처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KD처리(Kiln Dry) 등 기타 처리방법도 열처리에 포함된다.

### 2. 목재포장재 MB훈증

처리온도	약량	최저농도(g/m <sup>3</sup> )			
		0.5시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별표3]

## 열처리시설의 검사확인 방법

### 1. 확인방법

식물검역소 지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이 있을 때는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가. 서류확인

- (1)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유무와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온도계의 교정성적서는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을 받아야 되며, 교정오차 범위가  $\pm 0.5^{\circ}\text{C}$  이하이어야 한다.
- (2) 식물검역소 지소장은 상기 (1)호의 서류확인결과 시설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열처리시설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3) 서류확인결과 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나. 현장확인

##### (1) 구조확인

- (가) 시설규모 : 열처리시설의 수와 각각의 크기 및 용적 조사
- (나) 지붕 또는 천장 : 지붕 또는 천장의 재료와 그 두께 조사
- (다) 벽체 : 벽의 재료와 두께 조사
- (라) 바닥 : 바닥의 재료 조사
- (마) 문 : 문의 수와 종류 조사

##### (2) 설비확인

- (가) 온도계
  - ①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측정용 온도계 설치 유무 및 목재중심부 온도측정 기능여부 조사
  - ② 국가교정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나) 온도 기록장치
  - ① 열처리 하는 동안 온도 기록장치의 자동기록 여부 조사
  - ② 기록장치 기록지의 표시방법(시간, 온도, 눈금 등)의 적절성 및 기록된 내용의 출력가능 여부 조사
- (다) 송풍기(고열송풍장치, 보조송풍장치)

- ① 송풍기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조사
- ② 열처리시설 내 기류 순환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조사

(3) 설비확인

- ① 내용적의 50%이상 목재포장재를 적재하고 열처리시설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에서 목재포장재의 두께가 최소 150mm 이상되는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여, 규정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목재중심부 온도 변화를 기록한 자동기록장치의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 조사

**2. 현장 확인시 유의사항**

- 가. 현장 확인시 당해 열처리시설 설계자(건축자, 시공자 등), 열처리시설자 등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나. 현장 확인 중에는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별표4]

**열처리시설의 요건**

**1. 열처리 시설**

-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 :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온도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pm 0.5^{\circ}\text{C}$  이하이어야 함.
- 온도 자동기록장치 :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열처리하는 동안 자동으로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이 출력 가능하여야 함.
- 고내 기류 순환 장치 : 열처리실 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순환장치(송풍장치) 부착
- 고열발생장치 : 목재 중심부 온도를 56℃이상 30분 이상 처리 가능한 장치
- 기타 : 목재포장재의 온도감지기 설치용 드릴 및 온도감지기 삽입 후 접촉면 마감재료(실리콘 등)

**2. 열처리 책임자 지정**

-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열처리 공정과 열처리 요건을 숙지하여 열처리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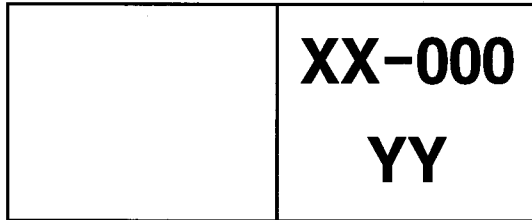


무 및 열처리마크 사용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 소독처리 마크의 표지

아래의 마크는 당해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 1.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록Ⅱ)
-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예 : korea ⇒ KR)
- 000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식물검역소에서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
-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 HT, MB)

### 2. 소독처리 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
-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
-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 3.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은 소독처리시설로 승인된 최초의 업체목록 및 갱신시 목록을 화물도착 전에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안내

캐나다 식품검사청(CFLA)은 WTO/SPS 사무국에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을 통보하고 2004년 1월 2일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화물(공산품 등)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 되지 않은 것은 수입금지되며, 수입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검역조치(소독 또는 폐기·반송)될 것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소독업체는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에 맞도록 목재포장재 소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문서번호:방제51192-205)에서 배포된 자료입니다.-편집자주

◇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2004년 1월 2일부터 수입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 되지 않은 것은 수입금지 한다고 하니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캐나다의 수입요건은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에 식물검역소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소독처리 마크를 찍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소독처리 마크가 IPPC(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소독처리 마크가 확정되면 마크가 찍혀있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 따라서,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수출업체에서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지정된 소독처리 업체에서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훈증)하고 국립식물검역소(지·출장소)로부터 소독사항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PC)를 발급 받아 수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시면 별도의 소독 처리나 증명서가 필요 없으니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가공된 목재포장재란?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과 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제거·사멸된 목재포장재.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

▣ 규정 발효일자: 2004. 1. 2.

▣ 규제대상 물품: 짐갈개, 파렛트, 나무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가공 목재포장재

▣ 적용 제외 물품: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모든 목재포장재 및 톱밥, 대패밥 등으로 제작된 목재포장재

■ 규제대상 지역 : 미 대륙이외 지역의 모든 국가

■ 수입요건

○ 소독되지 않은 미가공 목재포장재 : 수입금지

○ 소독처리된 미가공 목재포장재

- 아래 목재 소독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국 식물보호 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Zm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함.

- 목재포장재를 처리하는 시설을 승인하고 감시하는 증명시스템이 없는 국가산 목재포장재는 2003. 12.1. 까지만 수입허용 되며, 이 경우 국가 식물보호기관의 공식적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승인된 소독처리 방법

○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 MB훈증 :

온도	처리시간	약량	비고
21℃ 이상	16시간	48gms/m <sup>3</sup>	상압에서
16℃ 이상	16시간	56gms/m <sup>3</sup>	상압에서
11℃ 이상	16시간	64gms/m <sup>3</sup>	상압에서

○ 기타 CFIA (캐나다 식품검사청)가 승인한 방법

■ 불이행시 조치 : '03.12.1.까지 폐기 또는 소독, '03.12.1.이후 반송

※ 상기 검역요건은 초안으로 각 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조2

### ◆ 미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목재포장재(Solid wood packing material)

규제 또는 비규제 물품의 포장재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화물로 수입된 목재포장재는 다음 요건에 따라 일반 허가(General permit)에 의하여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1) 처리(Treatment) :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가) 목재중심부온도 최소 56℃이상에서 최소 30분이상 열처리되어야 한다.

동 처리에는 KD처리(Kiln-drying), 고압약품처리(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또는 스팀, 건열(dry heat), 온탕처리(hot water)를 통해 동 요건을 충족한 처리를 포함한다; 또는 (나) 밀폐된 장소에서 아래의 약량(g/m³)으로 적어도 16시간 이상 MB(methyl bromide)훈증처리 되어야 한다.

온도	최초 투약량 (g/m³)	투약 후 최소농도(g/m³)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 이상	48	36	24	17	14
16℃ 이상	56	42	28	20	17
11℃ 이상	64	48	32	22	19

○ 훈증된 목재포장재는 미환경보호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승인한 지침(label instruction)에 따라 농도를 위험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환기를 시켜야 한다.

**(2) 마크(Marking)**

각 물품의(each article)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마크를 찍어야 하며, 더 바람직한 방법은 동 요건을 만족시키는 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명료하고 영구적인 마크를 적어도 양 반대쪽에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 마크는 동 목재포장재가 승인된 대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승인한 것이어야 하고,
- 고유의 그래픽 표시(symbol), 목재포장재를 생산한 나라의 ISO two-letter 국가코드,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고유번호, 그리고 처리형태를 나타내는 약어(예:열처리를 했을 경우 "HT", methyl bromide 처리를 했을 경우 "MB")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요구하는 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의 즉각 재수출**

최초 도착항에서 검역관은 이 부절의 310.40-9조에서 요구하는 최초 도착항에서의 절차에 추가 또는 대신하여 상기 (b) (2)항에서 요구하는 마크가 없이 수입된 목재포장재에 대해 즉각 재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미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DOD)에 대한 예외**

DOD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상업용 화물을 포함한 비규제 물품을 포장하기 위해 DOD에 의해 사용된 목재포장재는 상기 (b)의 (2)항에서 요구하는 마크가 없이도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